

실습선 선박평형수 법령 적용에 관한 고찰

윤귀호* · 이윤석***

*, ** 한국해양대학교

An Study on Applying Laws related to Ballast Water of Training Ship

Yun, Gwi-Ho* · Lee, Youn-Suk***

*, **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핵심용어 : 선박평형수, 국제해사기구, 협약, 실습선, 청수

Key Words : Ballast water, IMO, Convention, Training ship, Fresh water

I. 선박평형수 협약 현황

선박평형수 협약 채택 및 발효

1. 선박평형수 협약 채택 배경

- 선박의 다양한 지역 항해
- 조선기술 발달에 따른 선박운항시간 단축으로 선박평형수 내 생물 생존가능성이 높아짐.
- **평형수에 의한 생물 이동으로 해역 환경과 생태계 교란**
- **연안 산업이나 다른 상업적 활동 및 자원에 큰 피해 유발**
- **피해 사례**
 - 미국 : 해역에서 79종의 수중 생물 유입으로 약 870억 달러 손해(1906~1991)
 - 오대호 : 얼룩줄무늬 담치 유입으로 연간 50억 달러 피해. 이외에 해역에서 16종의 수중 생물 유입으로 2060년까지 1,840억 달러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호주 : 검은종 무늬담치 유입으로 연간 2백만 달러 피해. 1988년까지 권구 양식산업에 1,800억 원 손해 발생

II. 선박평형수 국내 법령 현황

선박평형수 국내 법령

2. 선박평형수 관리법의 적용

- ① 이 법은 대한민국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적용
-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 관할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고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1. 선박평형수분할을 수 없도록 건조된 선박
 2. 군함 및 경찰용 선박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소형 선박
 - 가. 선박의 길이 50미터 미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선박
 - 나. 수역, 경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
 4.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사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 선박
 5.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선박
 6.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 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해당 선박

I. 선박평형수 협약 현황

선박평형수 협약 채택 및 발효

5. 선박평형수 협약 적용

- 적용
 - 평형수를 적재하도록 설계되고 건조된 모든 선박
- 다음의 선박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 평형수를 적재하도록 설계 또는 건조되지 아니한 선박
 - 선박으로부터 평형수와 배수는 인접국 또는 다른 국가들의 환경, 인간 건강, 재산 또는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협약 당사국이 결정된 경우로서 협약 당사국의 관할권 밖의 내역에서만 적재되는 선박
 - 군함, 배군 보급함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기타 선박으로서 당국과 정부의 비상업적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
 - 선박의 일부분 링크에 적재된 배출할 수 없는 영구적인 평형수용 기인 선박

IV. 실습선의 선박평형수 법령 적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1. 선박평형수 관리법과 협약의 적용 범위 차이

- 선박평형수 관리법과 협약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협약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기타 선박으로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국내 법령에는 명시 규정이 없음.
- 실습선은 상기 조항에 해당이 되어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하지만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르면 적용 대상임.

2.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설비를 위해 많은 예산 소요

- 선박평형수 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모든 실습선에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를 설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 예산이 소요
-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리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실습선의 특성상 해당 장비를 사용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음.

* First Author : captayun@kmou.ac.kr, 051-410-4201

† Corresponding Author : lys@kmou.ac.kr, 051-410-4471